발송번호: 9-5-2019-001893917
발송일자: 2019.01.08.

YOUR INVENTION PARTNER

특 허 청

거절결정서

출원인	성 명	
	주 소	
대리인	성 명	
	주 소	

출원번호	40-2017-0168004
상품류	제 41 류

이 출원은 (2018.11.26)자 접수된 의견서에 의하여 재심사한 결과 2018.06.27자 거절이유의 전부를 해소하지 못하였으므로 거절결정합니다.(관계법령 : 상표법 제54조)

참고 : 상표견본이미지

T-ARA

티아라

(※ 본 통지서의 상표견본 이미지는 출원서에 첨부된 상표견본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절결정의 이유]

1. 출원인 의견요지

○ 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이 출원상표는 소속사 계획과 기획 안에서 이루어진 걸그룹이며, 이에 관하여 모든 투자는 소속사를 통해 이루어졌음. 소속사는 각 앨범이 출시될 때마다 수억원 투자를 했었고, 구성원들과의 계약에 있어서도 수익금이 있을 시 분배를 하게 되어 있으며,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소속사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음

-‘티아라, T-ARA’라는 명칭은 구성원들의 소유가 아닌 소속사의 기획, 감독하에 활동한 명칭으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 명시되어 있는 타인의 명칭은 티아라 멤버들 소유의 상표가 아니라 출원인(소속사)의 소유의 상표임은 자명한 사실임

○ ‘티아라, T-ARA’는 출원인 소속사에 해당하는 하는 것이며, 이 출원상표는 상

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절이유를 해소하였다고 사료됨

2. 심사관 검토의견

ㅇ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명칭 등이 그 자체로서 저명한 것이면 되고, 상표로서 사용되어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저명한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및 거래의 범위와 상품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또는 지정상품과 관련한 거래사회에서 타인의 명칭 등이 널리 인식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후1033 판결 등 참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즉, 타인에 해당하는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상표법 제34조 제2항)

ㅇ 티아라 멤버들은 본원 출원 상표의 등록여부 결정 시기인 오늘 현재 기존 소속사(출원인)인「주식회사 엠비케이엔터테인먼트」와 계약관계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제출 전속계약서 참고). 그러므로 본원 출원상표의 출원인 「주식회사 엠비케이엔터테인먼트」는 정당한 출원인이 아니므로 그룹 구성원의 동의서 또는 상표권 소유에 관한 계약서 등 타인의 승낙을 받은 증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증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출원상표는 저명한 연예인 그룹 명칭인 '티아라,T-ARA'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구성원의 승낙을 받은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3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끝.

2019.01.08.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3과 심사관 임태완 _____

<< 안내 >>

1. 본 거절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는 본 결정서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기간은 상표법 제17조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청구기간 만료전까지 법정기간연장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 4월 1일부터는 특허고객번호, 대리인번호의 (통지서)수취방법이 온라인수령인 경우 이의결정에 따른 거절결정서를 전자문서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전자문서로 발송된 통지서를 일주일 이내 수신하지 않은 경우에만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등에 있어서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통지서의 심사결과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특허청 ☎ 042-481-5333(담당심사관 임태완)로, 불복심판 서식 또는 절차에 대하여는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